의안번호	제139호
의 결	2015년 월 일
연 월 일	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광희의	비원 등	7인	
발의연월일	2015년	2월	23	일

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 안 번 호 139

(이광희 교육의원 대표발의)

발의연월일: 2015년 2월 23일

발 의 자:이광희, 윤홍창, 정영수,

김양희, 이숙애, 이종욱,

연철흠의원(7인).

1. 개정이유

○ "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"에서 사용한 '근로자'란 용어는 그 의미가 포괄적이고 해석상 불명확성이 있어, '근로자'를 '교육공무직원'으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「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」를 「충청북도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」로 변경함.

나. '근로자'를 '교육공무직원'으로 변경함. (안 제1조~안 제9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근로기준법」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관계부서협의: 협의 완료

다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

1) 기 간: 2015. 2. 10. ~ 2015. 2. 16.(7일간)

2) 제출의견: 특기할 사항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"를 "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"로 한다.

제1조부터 제9조의 조문 중 "근로자"를 "교육공무직원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충청북도교육청 <u>근로자</u> 채용 및	충청북도교육청 <u>교육공무직원</u> 채용
관리 조례	및 관리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	제1조(목적)
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<u>근</u>	ग्रिक्
<u>로자</u> 의 채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	<u> 공무직원</u>
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불안을 해	
소하고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는데	
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 <u>근로자"란</u> 「유아교육법」,「초	1. " <u>교육공무직원"이란</u>
• 중등교육법」,「지방공무원법」	
등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	
서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	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
람을 말한다.	
가.~다. (생략)	가.~다.(현행과 같음)
2.~3.(생략)	2.~3.(현행과 같음)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각급 기	제3조(적용범위)
관에 근무하는 <u>근로자</u> 에 대하여	<u>교육공무직원</u>
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	
지 아니한다.	

현 행	개 정 안
1.~4.(생략)	1.~4.(현행과 같음)
제4조(정원 및 배치기준) ① 교육감은	제4조(정원 및 배치기준) ①
각급 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	
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<u>근로자</u> 의	교육공무직원
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	
야 한다.	
② 교육감은 각급 기관 별로 <u>근로</u>	② 교육공무
<u>자</u> 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	<u>직원</u> 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
행하여야 한다.	시행하여야 한다.
제5조(관리계획 수립) 교육감은 <u>근로</u>	제5조(관리계획 수립) <u>교육</u> <u>공무직원</u>
<u>자</u> 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확립과 적	
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, 복무, 임	
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 관리계획	
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	
제6조(채용)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	· 제6조(채용) ①
의 <u>근로자를</u> 채용한다. 다만, 교육	교육공무직원을
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기관	<u> </u>
의 장에게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	
임할 수 있다.	
② <u>근로자</u> 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	① ㅋ약구기이
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	② <u>교육공무직원</u>
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	
교육감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	
아니한다.	
③ 교육감은 <u>근로자</u> 의 일부를 장애	

현 행	개 정 안
인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③ <u>교육공무직원</u>
제7조(복무) 교육감은 <u>근로자</u> 에게 공	제7조(복무) <u>교육공무직원</u>
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관리 기준을	
마련하여야 하며, 각급 기관의 장은	
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	
제8조(전보) ①교육감은 <u>근로자</u> 의 생	제8조(전보) ①교육공무직원
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	
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.	<u>.</u>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교육훈련 등) 교육감은 <u>근로</u>	제9조(교육훈련 등) 교육공무직
<u>자</u> 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능력	<u>원</u>
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	
한다.	.

관계 법령 발췌

□ 근로기준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근로자"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.
- 2. "사용자"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,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.
- 3. "근로"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.
- 4. "근로계약"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.
- 5. "임금"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, 봉급,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.
- 6. "평균임금"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.
- 7. "소정(所定)근로시간"이란 제50조, 제69조 본문 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.
- 8. "단시간근로자"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.
-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.

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기간제근로자"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(이하 "기간제 근로계약" 이라 한다)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.
- 2. "단시간근로자"라 함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.
- 3. "차별적 처우"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
 - 나. 정기상여금,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
 - 다.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
 - 라.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
- 제4조(기간제근로자의 사용)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(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)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.
 - 1.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
 - 2. 휴직·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 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
 - 3. 근로자가 학업,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
 - 4. 「고령자고용촉진법」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- 5. 전문적 지식·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·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
 - 6.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
 -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 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.